

의안번호	2216574
의 퇴 인	용혜인의원
회 답 일	2026.2.25.
추계번호	26D0679

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8억 3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12억 7,700만원(연평균 42억 5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지원위원회·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	71	145	147	149	151	664	133
정책지원관 증원	2,286	4,245	4,350	4,458	4,567	19,906	3,981
각종 계획 수립	456	-	-	114	-	570	114
각종 위원회 설치	17	30	30	30	30	137	27
합 계	2,830	4,420	4,527	4,751	4,748	21,277	4,255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(광역 생활권 지정)	-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·군·구의 광역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·군·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지정 또는 변경 시 광역생활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.	의무규정
2	안 제13조(전남 광주특별시 지원 위원회의 설치)	-특별시의 성과목표 평가 및 특별시 행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		-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	재량규정

3	안 제19조~안 제20조(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)	-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으며,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시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		-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양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24조(의회 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)	-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26조(자치 조직에 관한 특례)	-특별시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,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,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특별시의 부교육감의 수는 2명으로 하고 국가공무원으로 함	의무규정
6	안 제28조(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)	-특별시의 소방사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직속기관으로 소방본부를 두고,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함	의무규정
7	안 제32조(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)	-특별시장은 특별시 설치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·직원 등에 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비용·이주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38조(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특례)	-특별시의회는 청구권자 300명 이상이 서명하는 주민조례청구 사안에 대하여 조례가 청구권자의 발안 취지에 따라 입안될 수 있도록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9	안 제41조(마을 공동체 활성화)	-특별시 관할 시·군·구 주민은 지역사회 문제해결,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공익적 목표를 위해 활동하는 마을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, 국가와 특별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42조(국가의 재정지원)	-국가는 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·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11	안 제44조, 안 제46조(통합 특별교부금 지원 등)	-국가는 보통교부금과 별도로 통합특별교부금을 특별시에 교부하고,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특별시교육청에 교부하여야 함 -통합특별교부금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액수, 지원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의무규정
12	안 제51조(자치 경찰제에 관한 특례)	-국가는 특별시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13	안 제54조~안 제56조(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)	-특별시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,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함 -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사무국의 조직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함	의무규정
14	안 제63조(교육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)	-통합특별시 부교육감의 수를 2명으로 하고, 부교육감 1명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, 다른 1명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함	의무규정

15	안 제64조(특별 시 특별교육위원 회의 설치 및 기능)	-특별시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·변경 등을 위하여 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특별교육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16	안 제65조(지방 교육행정협의회 에 관한 특례)	-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와 일반 행정사무 간의 협력·조정을 위하여 특별시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둠	의무규정
17	안 제69조, 안 제 71조, 안 제72 조, 안 제75조 (자율학교 운영 특례 등)	-특별시교육감은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를 설립·운영할 수 있음 -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은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특별시 안의 교육국제화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국가 또는 특별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구 내 학교의 설립, 외국어 전용 마을의 조성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특별시장, 특별시교육감 등은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, 돌봄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국가는 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대학의 교육·연구 기능이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18	안 제79조(기본 계획의 수립)	-특별시장은 인공지능·에너지·문화수도 조성을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,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19	안 제81조(기본 계획심의회)	-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·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에 기본계획심의회를 둠	의무규정
20	안 제87조 ~안 제90조(개 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등)	-통합특별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음 -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21	안 제95조, 안 제 96조(산업혁신 기금운용심의회 의 설치 등)	-산업혁신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에 산업혁신기금운용심의회를 둠 -특별시장은 산업혁신기금의 운용 수익의 관리를 위하여 산업혁신이익공유기금을 설치하고, 산업혁신이익공유위원회가 운용·관리하도록 함	의무규정

22	안 제109조 ~안 제111조(영 농형 태양광 사 업성 보장 및 지 원 등)	-국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정책 자 금을 우선 및 수시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		-특별시장은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 를 설치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음 -국가는 특별시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23	안 제120조 ~안 제133조(인 공지능 메가클러 스터 조성 특례)	-특별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 역 단위 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이에 필요 한 행정·재정·기술적 지원을 우선 추진하여야 함 -국가와 특별시는 인공지능·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 간 공 동연구개발, 기업 유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,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-특별시장은 전남광주 미래모빌리티 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, , 국가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규제특례, 전문인력 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		-국가는 특별시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, 이 를 위하여 국가인공지능혁신진흥원을 설립하며 행정적·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시장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,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 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국가는 특별시에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랩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24	안 제125조(인 공 지능·에 너 지 융합 특화산업도 시 연계 육성 및 지원)	-특별시장은 첨단 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 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함	의무규정
25	안 제129조(모 빌리티 미래도시 조성)	-국가는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모빌리티 미래도시 추진단을 두고, 모빌리티 미래 도시 조성의 목표, 중장기 발전전략, 교통망 연계 등의 사항 을 포함하는 모빌리티 미래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
26	안 제140조 ~안 제152조(소재·부품·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)	-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시장이 관할구역 내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첨단의료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수소특화단지의 기반조성,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등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국가는 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합정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고,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세제·재정·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27	안 제153조(국가기간산업 행정·재정 우선 지원)	-국가는 특별시 내 석유화학산업, 철강산업, 조선산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국가는 국가기간산업 육성에 대하여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28	안 제154조 ~안 제159조(석유화학 산업전환 특구의 지정 등)	-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석유화학 산업전환 특구, 철강산업 산업전환 특구, 조선산업 산업전환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29	안 제160조 ~안 제171조(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)	-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·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으며,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국가는 특별시장이 추진하는 마한·후백제의 역사문화 조사·연구, 관광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설·공간 조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지역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의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며, 국가는 이를 위하여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30	안 제172조, ~안 제188조(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)	-특별시장은 특별시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·조성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-국가는 특별시장이 갯벌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갯벌 등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-특별시장은 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국가는 개발대상섬의 주민소득 증대,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하여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		-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31	안 제174조(푸드테크산업 육성 계획 등)	-특별시장은 5년마다 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32	안 제183조(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)	-특별시장은 특별시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갯벌 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갯벌관리구역의 지정·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에 갯벌관리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33	안 제191조 ~안 제195조(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에 관한 특례)	-특별시장은 특별시의 신·재생에너지 보급·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		-국가는 특별시장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34	안 제198조(영산강·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례)	-국가는 영산강·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에 사무국을 설치하고,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35	안 제201조 ~안 제205조(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)	-국가는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·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,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	의무규정
		-국가 및 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로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 매입비,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36	안 제208조(특별시 통합 공간 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)	-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·보전·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·농촌·해양·도서를 포괄하는 특별시 통합 공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	재량규정
37	안 제213조 ~안 제214조(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)	-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, 서남권 중심 공항을 조성하기 위한 군공항 이전과 연계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		-특별시는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38	안 제224조(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)	-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	재량규정
39	안 제225조(대중교통 운영 지원에 관한 특례)	-국가는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40	안 제226조(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)	-특별시장이 특별시 관할구역 내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, 국가는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41	안 제230조 ~안 제240조(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등)	-국가와 특별시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특별시 관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함 -국가와 특별시는 특별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주민을 대상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함 -국가 및 특별시는 특별시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·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 -국가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국립의과대학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지역의사를 양성하여야 하며,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2개 이상의 시·군·구에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설치하여야 함	의무규정
42	안 제241조(사회연대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)	-특별시장은 특별시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43	안 제246조 ~안 제247조(청년지원정책 재정 지원 특례)	-국가는 특별시의 청년유출을 막고,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국가는 특별시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44	안 제252조(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)	-특별시장은 특별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국가는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45	안 제254조(문화예술의 진흥)	-특별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조(광역생활권 지정)	×	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대한 규정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위원회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
2	안 제13조(전남광주 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)	○	
3	안 제19조~안 제20조(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)	×	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경우, 이양받은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나, 이양사무의 범위, 재정지원의 규모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하기 곤란함
4	안 제24조(의회 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)	○	
5	안 제26조(자치조직에 관한 특례)	—	미대상: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고 있으나, 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부시장, 부지사 수는 각 2명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, 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 수 또한 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수가 각 1명이므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6	안 제28조(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)	×	통합특별시장 직속 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직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7	안 제32조(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)	×	근무지 변경 공무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지원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하기 곤란함
8	안 제38조(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특례)	×	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9	안 제41조(마을공동체 활성화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10	안 제42조(국가의 재정지원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11	안 제44조, 안 제46조(통합특별교부금 지원 등)	×	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12	안 제51조(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
13	안 제54조 ~안 제56조(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)	×	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감사위원회 사무국 등에 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및 사무국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14	안 제63조(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)	×	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15	안 제64조(특별시 특별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	0	
16	안 제65조(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특례)	0	
17	안 제69조, 안 제71조, 안 제72조, 안 제75조(자율학교 운영 특례 등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18	안 제79조(기본계획의 수립)	0	
19	안 제81조(기본계획심의회)	0	
20	안 제87조 ~안 제90조(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등)	×	-일괄처리기구 구성·운영을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직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-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인세·소득세·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,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조세 감면 또는 개발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는 개발사업을 추정하기 곤란함
21	안 제95조, 안 제96조(산업혁신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)	0	
22	안 제109조 ~안 제111조(영농형태양광 사업성 보장 및 지원 등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23	안 제120조 ~안 제133조(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24	안 제125조(인공지능·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 연계 육성 및 지원)	0	
25	안 제129조(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)	0	

26	안 제140조 ~안 제152조(소재· 부품·장비산업 특화 단지의 지정 등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27	안 제153조(국가기 간산업 행정·재정 우 선 지원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28	안 제154조 ~안 제159조(석유화 학 산업전환 특구의 지정 등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29	안 제160조 ~안 제171조(문화산 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30	안 제172조, ~안 제188조(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31	안 제174조(푸드테 크산업 육성계획 등)	0	
32	안 제183조(갯벌관 리구역 지정 및 해양 생태계 보전 등에 관 한 특례)	0	
33	안 제191조 ~안 제195조(탄소중 립 선도도시 지정 등 에 관한 특례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34	안 제198조(영산강· 섬진강수계관리위원 회의 설치 운영에 관 한 특례)	×	영산강·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35	안 제201조 ~안 제205조(투자진 흥지구의 지정 등)	×	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36	안 제208조(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 선 적용 및 경과조치)	0	
37	안 제213조 ~안 제214조(군사시 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
38	안 제224조(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39	안 제225조(대중교통 운영 지원에 관한 특례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40	안 제226조(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)	×	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41	안 제230조 ~안 제240조(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등)	×	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42	안 제241조(사회연대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)	0	
43	안 제246조 ~안 제247조(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44	안 제252조(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)	0	
45	안 제254조(문화예술의 진흥)	0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경우 조직 및 인력 조정, 예산사업 통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예산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, 이에 따른 감소 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서 제외함
- 안 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 지원위원회(이하 “지원위원회”라 함)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,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가정
 -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총 45명이며, 이 중 민간위원은 25명으로 가정
 -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25명이며, 이 중 민간위원은 15명으로 가정
 -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회의당 25만원의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 수당을 지급하며, 각각 연 4회 회의를 실시한다고 가정(시행일을

고려하여 2026년은 각각 2회 개최를 가정)

-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
- 안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며, 실무지원단의 운영비용은 특별자치시·도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국무조정실의 특별자치시·도지원단의 평균 운영예산을 준용함
- 세종·제주·강원·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·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·도지원단의 2026년 운영예산은 4억 1,100만원¹⁾이고, 평균 운영예산은 1억 275만원임
- 안 제24조에 따른 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관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 정수만큼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,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함
- 현행법령²⁾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, 사·도의 경우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되,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-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는 현 광주광역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 의원정수를 합한 수로 함
- 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을 증원하면,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관은 총 43명임

1) 행정실무원 임금, 직책수행경비, 일반수용비, 연구용역비 등(자료: 국무조정실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)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)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(위원회를 포함한다)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: 6급 이하

2. 시·군·구의 경우: 7급 이하

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(이하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이라 한다)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[표 2] 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관의 수

(단위: 명)

구 분	의원정수	현행 정책지원관 정수	증원 가능 정책지원관 수
광주광역시의회	23	11	12
전라남도의회	61	30	31
계	84	41	4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[별표 13]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6급의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³⁾의 평균인 72,157천원을 적용하고,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
-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공간은 기존 지방의회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
- 안 제79조에 따른 전남광주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, 안 제125조에 따른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, 안 제129조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기본계획, 안 제174조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, 안 제208조에 따른 특별시 통합 공간계획, 안 제241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, 안 제25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안 제254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추계에 활용한 2024년 대전광역시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을 준용함
- 제정안의 각 계획 중, 안 제125조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, 안 제241조의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은 제정안의 내용에 따라 3년을 수립주기로 하여 2026년과 2029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, 그 외 기본계획은 5년을 수립주기로 하여 추계 첫해인 2026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

3)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[별표 13]

5.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

가.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(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)
(단위: 천원)

구분	상한액	하한액
6급(상당)	86,606	57,708

- 안 제64조에 따른 특별교육위원회, 안 제65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, 안 제81조에 따른 기본계획심의회, 안 제95조에 따른 산업혁신기금운용심의회, 안 제96조에 따른 산업혁신이익공유위원회 및 안 제183조에 따른 갯벌관리위원회의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고, 추계기간 동안 수당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함
 - 위원회 성격에 따라 안 제81조의 기본계획심의회는 연간 1회, 그 외 위원회는 연간 2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
 - 회의참석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 수는 특별교육위원회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 15명, 기본계획심의회 및 갯벌관리위원회 12명, 산업혁신기금운용심의회 및 산업혁신이익공유위원회의 경우 6명으로 가정
- 소비자물가상승률,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, 기관부담금 요율, 1인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⁴⁾을 적용
-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하고, 2026년의 경우 인건비, 위원회 운영비 등은 6개월분만을 반영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지원위원회·실무위원회·실무지원단의 설치(안 제13조)

- (지원위원회·실무위원회) 추계의 전제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25명, 실무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15명에 대하여 연 4회 회의를 하고 회당 25만원의 수당을 지급
- (실무지원단) 추계의 전제에 따라 세종·제주·강원·전북 4개의 특별자치

4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,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,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, 1인당 자산취득비(2025.11.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물가상승률(%)	1.9	2.0	2.0	2.0	2.0	2.0
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(%)	2.4	2.4	2.4	2.4	2.4	2.4
기관부담금(%)	13,067	13,129	13,193	13,285	13,379	13,475
1인당 자산취득비(천원)	4,980	5,078	5,180	5,283	5,389	5,49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시·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·도지원단의 2026년 평균 운영예산(1억 275만원)을 준용하고,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
- 추계 결과, 안 제13조에 따라 지원위원회, 실무위원회, 실무지원단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,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억 6,4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지원위원회·실무위원회·실무지원단의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수당	13	25	25	25	25	113
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수당	8	15	15	15	15	68
실무지원단 운영비	51	105	107	109	111	483
합 계	71	145	147	149	151	664

주: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(안 제24조)

- (보수)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상당의 2026년 연봉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평균한 연간 평균연봉은 7,216만원임
- 추계 결과, 정책지원관 43명 증원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5억 5,100만원 등 2026년부터 5년간 147억 2,600만원으로 예상됨
-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2026년은 6개월에 해당하는 보수만 반영

[표 4]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보수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2026 기준			2026 (6개월)	2027	2028	2029	2030	합계
1인당 보수 (a)	증원 인원 (b)	연간 총액 (a×b)						
72	43	3,103	1,551	3,177	3,254	3,332	3,412	14,726

주: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기관부담금) 보수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,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부담률을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300만원 등 5년간 19억 4,800만원으로 예상됨

[표 5]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기관부담금	203	417	429	443	456	1,94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기본경비)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인력운영비 대비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(20.5%⁵⁾)을 보수총액에 적용하면,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1,800만원 등 5년간 30억 1,800만원으로 예상됨

[표 6]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기본경비	318	651	667	683	699	3,01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자산취득비)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은 2026년에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취득비도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면,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1,400만원으로 예상됨

[표 7]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자산취득비	214	-	-	-	-	21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5) 인력운영비 39조 6,999억원, 기본경비등 8조 1,503억원(일반회계, 특별회계 합산 총규모에 대한 순계예산 기준)

자료: 행정안전부 「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」

- (추계 결과) 제정안에 따라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정책지원관을 증원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2억 8,600만원 등 5년간 199억 6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8]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보수	1,551	3,177	3,254	3,332	3,412	14,726
기관부담금	203	417	429	443	456	1,948
기본경비	318	651	667	683	699	3,018
자산취득비	214	-	-	-	-	214
합 계	2,286	4,245	4,350	4,458	4,567	19,90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각종 계획 수립(안 제79조, 안 제125조, 안 제129조, 안 제174조, 안 제208조, 안 제241조, 안 제252조 및 안 제254조)

- 안 제79조에 따른 전남광주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, 안 제125조에 따른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, 안 제129조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기본계획, 안 제174조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, 안 제208조에 따른 특별시 통합 공간계획, 안 제241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, 안 제25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안 제254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 대전광역시의 “대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”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 5,7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함⁶⁾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안 제125조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및 안 제241조의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은 3년을 수립주기로 하여 2026년과 2029년에 비용이 발생하고, 그 외 6개 계획은 첫해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6) 「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(의안번호: 2213471)」에 대한 비용추계서 상 계획 수립 비용

- 제정안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등 8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4억 5,600만원 등 5년간 5억 7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9] 각종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전남광주특별시 개발 기본계획	57	-	-	-	-	57
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	57	-	-	57	-	114
모빌리티 미래도시 기본계획	57	-	-	-	-	57
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	57	-	-	-	-	57
특별시 통합 공간계획	57	-	-	-	-	57
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	57	-	-	57	-	114
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	57	-	-	-	-	57
문화예술진흥계획	57	-	-	-	-	57
합 계	456	-	-	114	-	57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각종 위원회 설치(안 제64조, 안 제65조, 안 제81조, 안 제95조, 안 제96조 및 안 제183조)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민간위원 수는 특별교육위원회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 15명, 기본계획심의회 및 갯벌관리위원회 12명, 산업혁신기금운용심의회 및 산업혁신이익공유위원회의 경우 6명으로 하고, 회의참석수당은 25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
- 제정안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,700만원 등 5년간 1억 3,7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0] 각종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수당 지급 횟수	특별교육위원회 (15명×연 2회)	15	30	30	30	30	135
	지방교육행정협의회 (15명×연 2회)	15	30	30	30	30	135
	기본계획심의회 (12명×연 1회)	12	12	12	12	12	60
	갯벌관리위원회 (12명×연 2회)	12	24	24	24	24	108
	산업혁신기금운용심의회 (6명×연 2회)	6	12	12	12	12	54
	산업혁신이익공유위원회 (6명×연 2회)	6	12	12	12	12	54
	소계(a)	66	120	120	120	120	546
회의참석수당(b)		0.25	0.25	0.25	0.25	0.25	0.25
계(a×b)		17	30	30	30	30	137

주1: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, 2026년 산림복지심의위원회, 섬발전심의위원회 및 갯벌관리위원회 회의개최횟수는 1/2만 반영

주2: 단수 조정에 따른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마. 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8억 3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12억 7,7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지원위원회·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	71	145	147	149	151	664
정책지원관 증원	2,286	4,245	4,350	4,458	4,567	19,906
각종 계획 수립	456	—	—	114	—	570
각종 위원회 설치	17	30	30	30	30	137
합 계	2,830	4,420	4,527	4,751	4,748	21,27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